#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



KRILA policy brief

# 지방의회 조례제정 수준 논의와 바람직한 방향

# ○ 자치입법권의 쟁점

# 지방자치의 핵심권한

• 자치입법권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의 핵심권한임

#### 입법범위의 제약심화

• 현행의 자치입법권은 입법범위가 심히 제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적 입법권의 행사가 곤란하여 자치입법권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임

## 입법범위 확대논의 확산

• 최근에 이르러 분권형 개헌을 기회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, 외국사례 등을 통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어 왔음

# ○ 자치입법권의 실태

##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

• 현행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「헌법」제117조와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에 따라서 "법령의 범위 안에서"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자치계층을 기준으로는 시군구의 조례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

# 기본권 제한 및 벌칙부과는 법률의 위임을 전제

• 조례의 제정범위와 더불어 조례를 통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, 나아가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구속요건이 전제되어 있음

# 〈표 1〉 자치입법권의 실태

구분	내용		
헌법	● 헌법규정(「대한민국 헌법」제117조) -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		
자치법규 단계	● 조례제정(「지방자치법」제22조) -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-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전제		
	● 규칙의 제정(「지방자치법」제23조) -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		
	● 기초범위(「지방자치법」제24조) -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의 위반 불가		

# ○ 외국의 자치입법권 사례

#### 분권수준에 따른 다양화

-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, 지방자치강화형과 광역지방정부형 및 연방정부형 등과 같이 해당국가의 분권수준이 높을수록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
- 예를 들면, 지방자치강화형인 일본은 "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"규정하고 있고, 광역지방정부형인 영국은 법률에 준하는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, 연방정부형인 미국은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음
- 다만, 자치입법권과 달리 조례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연방정부형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, 조례를 통한 벌칙의 제정권은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

## 〈표 2〉 분권수준별 자치입법권의 실태비교

구분	지방자치강화형	광역지방정부형	연방정부형
분석대상 국가	일본	영국	미국/독일
입법권 범위	● 헌법: 법률의 범위 내에서 ● 지방자치법: 법령에 위반하 지 않는 범위에서	● 법률에 준하는 조례제정권 부여(법률과 충돌 시 무효)	● 미국: 법률제정권 부여 ● 독일: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
기본권 제한	불가	불가	가능
벌칙제정권	가능	가능	가능

# ○ 기존의 개선논의

#### 개헌논의의 제시의견

- 지난 1998년 대통령이 분권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자치입법권의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었고, 의견별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현행의 자치입법권에 비해서는 입법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임
-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분권개헌 국민회의,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공통적으로 법률의 우선주의를 인정하되,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도 법률의 지위를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, 대통령의 분권개헌안에서는 조례의 지위를 부여하면 서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
- 다만, 대통령의 분권개헌안이 여타의 개선대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"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"로 규정함으로써 현행의 기준에서 명령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진일보한 접근임
- 한편, 자치입법권을 통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분권개헌안만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, 나머지 대안들은 의무부과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, 벌칙부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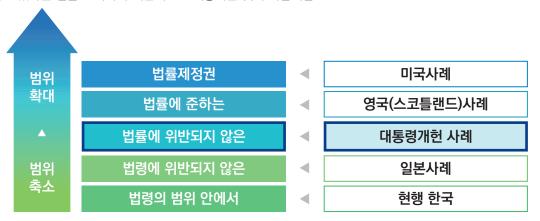
#### 〈표 3〉 개헌사례의 비교분석

구분	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	분권개헌 국민회의	한국지방 자치학회	대통령
자치입법권 범위	● <b>법률우선주의</b> - 예외조치 적용	● <b>법률우선주의</b> - 예외조치 적용	• <b>법률우선주의</b> - 예외조치 적용	• <b>법률우선주의</b> -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
자치입법권 지위	● <b>이원화</b> - 광역 : 법률 - 기초 : 조례	• <b>일원화</b> - 광역 : 광역법률 - 기초 : 기초법률	• <b>일원화</b> - 광역 : 광역법률 - 기초 : 기초법률	● <b>일원화</b> - 광역 : 조례 - 기초 : 조례
기본권 제한권한	● <b>허용</b> - 기본권 제한	• <b>허용</b> - 기본권 제한	• <b>허용</b> - 기본권 제한	● <b>제한</b> -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
벌칙 제정권	• 제한적 허용 - 광역 : 3개월 이내 의 지역형 - 기초 : 금고형 이내 의 지역형	● 관련규정 부재	• 제한적 허용 - 주민투표 실시 (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)	● 관련규정 부재

# ○ 자치입법권의 개선방향

#### 분권수준 연계

-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분권수준을 목표로 연계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이러한 관점에서는 현행정부의 분권정책 수립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연방제수준의 분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함
- 현실적인 관점에서 연방제수준의 분권이 순수한 의미의 미국과 같은 연방제나 영국과 같은 광역지방정부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,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 분권수준을 의미한다면 일본 등과 같은 지방자치강화형을 사례로 들 수 있음
- 따라서 일본의 사례인 "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"가 검토될 수 있으나,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분권개헌안에서 일 본보다 확대된 "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"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, 현실적으로 이를 대안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함
- 다만, 조례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유보하되, 벌칙의 제정권은 기존의 과태료 등을 강화한다는 의미와 다수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

〈그림 1〉 자치입법권 범위확대 검토대안

 ▶ 참고자료 : 금창호(2018).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범위확대 방안.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 원문보기 ♪

 ▶ 내용문의 : 금창호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gch@krila.re.kr, 033-769-9840)

 ▶ 지난호 :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과 방향(김지수 부연구위원)

♥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(26464)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(반곡동) TEL: 033-769-9822 FAX: 033-769-9805 이메일: brief@krila,re,kr COPYRIGHT(C) BY KRILA, ALL RIGHTS RESERVED